

서정대학교 제7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자문 안건 : 총 1건

안건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2024.4.15. 자) 관련 심의의 건

- 근거 1. 서정대학교 규정집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 2. 제7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 승인의 건



서정대학교
SEOJEONG UNIVERSITY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제75차 대학평의회

□ 회의일시 : 2024.4.4.(목) 10:00

□ 회의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 참석의원 : 6 인

□ 회의안건 :

안건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2024.4.15. 자) 관련 심의의 건

[1] 회의 경과

□ 회의 개최

- 서정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 평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자문이 필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의원회의 사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회의 개시 전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대학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회의 개최 여부를 사전 공지하며, 의원들에게 회의 안건 및 회의자료 송부하여 회의 내용 사전 안내.
- 의장 포함 총원 12인 중 6인 출석으로 회의 성원이 되었음.

□ 의원 소개

- 대학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과 자격), 제4조(임기)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 위촉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의원 구성됨.

연번	직명	성명	구성단위
1	의장	안성규	교원
2	의원	양경승	
3	의원	정하정	
4	의원	김현재	
5	의원	김상우	직원
6	부의장	송은정	
7	의원	신영록	
8	의원	김하성	외부
9	의원	안성준	
10	의원	윤형한	
11	의원	양삼승	
12	의원	박성현	학생

□ 안전 심의 및 자문

● 안전 1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2024.4.15. 자) 관련 심의의 건

○ 주요의견

-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2조(기능) 제2호에 의거하여 대학평의회에서는 대학의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기 전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금번 안전으로 상정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2024.03.25. 자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10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
- 금번 학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의자료1]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따라, 대학평의회에서는 2024년 4월 15일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24.4.15. 자로 시행될 예정.

□ 회의 결과

▶ 심의안건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2024.4.15. 자) 관련 심의의 건

- 서정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는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인원 전체 참석 으로 가결 함(심의)

성명	가	부	결의일	참조의견
양경승	○		2024.04.04.	
안성규	○		2024.04.04.	
정하정				
김현재	○		2024.04.04.	
신영록	○		2024.04.04.	
송은정	○		2024.04.04.	
김상우				
김하성				
안성준	○		2024.04.04.	
윤형한				
양삼승				
박성현				

[2] 제75차 대학평의회 심의·자문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O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함

2024년 4월 4일

대학평의회 의원

안성규

(서명인)

[2] 제75차 대학평의회 심의·자문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함

2024년 4월 4일

대학평의회 의원

양경능

(서명/인)

양경능

[2] 제75차 대학평의회 심의·자문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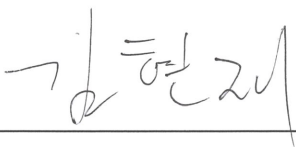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심의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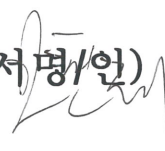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함

2024년 4월 4일

대학평의회 의원



(서명/인)


[2] 제75차 대학평의회 심의·자문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O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함

2024년 4월 4일

대학평의회 의원

송 은 정

(서명/인)

[2] 제75차 대학평의회 심의 · 자문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O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함

2024년 4월 4일

대학평의회 의원

신영록


(서명/인)

[2] 제75차 대학평의회 심의·자문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O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함

2024년 4월 4일

대학평의회 의원

안성근

(서명/인)

[3] 회의 자료

[회의자료1]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의 건

[4] 회의 사진





서 정 대 학 교

수신자 각 부서(처)장 및 학내구성원

(경유)

제 목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의 건

1. 관련근거 : 서정대학교 규정집 학칙 제16장(학칙 제·개정 절차)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의견 제출 요청의 건(기획조정실-2023-9634, 2024.02.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불임과 같이 공람공고를 시행하오니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람공고 및 공람이 완료된 본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15일 자 시행 예정입니다.

※ 공람 후 의견제출 등은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붙임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문 1부.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부.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조는 대비표 각 1부.

기 획 조 정 실 장



기안자

강한도

기획전략과장

오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지

시행 기획조정실 제24-03-05호

(2024.03.25.)

접수

/

www.seojeong.ac.kr

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문현면 서정로 27

/

공개

전화 031-850-5286 전수 031-859-6936 / hanmo10@seojeong.ac.kr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공람 공고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2024년 4월 15일 자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2.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0일간
3. 관련부서 : 각 부서 및 학과, 교수협의회
4. 의견제출 : 기획조정실 대리 강한도

2024년 3월 25일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장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규정명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1. 개정 사유

- 1) 학칙
 - ▶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변경
 - ▶ 입학허가의 절차를 위한 변경
 - ▶ 교육과정 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변경
 - ▶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한 졸업필요학점 완화
 - ▶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요건에 대한 변경
 - ▶ 학사관련 사항에 대한 교수회의 권한 변경
- 2) 학칙 시행세칙
 - ▶ 용어의 통일성, 명확성 제고
 - ▶ 기타 학칙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세칙 변경
 - ▶ 조직 개편에 따른 양식 수정 필요부분 발생

2.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개정내용
학칙	제15조(교직원)	특임교원 임용 및 위촉 관련 오기입 사항 변경
	제18조(조직)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제22조(입학허가)	신속한 입학허가를 위한 절차 변경
	제29조(교육과정)	이미 명확성 제고를 위한 용어 변경
	제46조(졸업)	졸업필요학점에 대한 완화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전문기술석사과정 자격증 취득 졸업 트랙 추가
	제48조(진분기졸업석사과정 수료)	졸업요건 개편에 따른 수료 기준 변경
	제88조의2(남입금의 반환)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반환금 기준 완화
	제71조(소집 및 심의)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권한 변경
	제2조(재학생등록)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반환금 기준 완화
학칙 시행 세칙	제48조(졸업의 기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졸업필요학점 완화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학칙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변경
	[별지서식 제5호]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부서장) 변경
	[별지서식 제10호]	오탈자에 대한 수정
	[별지서식 제11호]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부서장) 변경
	[별지서식 제12호]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부서장) 변경

[붙임 3]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문	원 형	개 정(인)	규정명: 학칙
제15조(교직원)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2022.12.01.> -중학- 3. 특임교원 : 국가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공적 또는 상부노력이 뛰어난 자로, 분교, 별채 등에서 공적 또는 상부노력이 뛰어난 자로 분교 별채를 위하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하(후)대장 및 각 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01.> -생학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2022.12.01.> -중학- 3. 특임교원 : 국가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공적 또는 상부노력이 뛰어난 자로, 분교, 별채 등에서 공적 또는 상부노력이 뛰어난 자로 분교 별채를 위하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하(후)대장 및 각 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01.> -생학	오기입으로 인한 변경

제8조(조각)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 학생부처, 행정처,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평생직업교육처, 기획조정처, 입학홍고처, 국제교류처, 대학협력처, 대학협력처 등을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 및 센터는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04.03.25, 2006.03.01, 2011.06.07, 2012.02.10, 2014.02.26, 2016.02.29, 2017.04.27, 2019.10.01,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2.03.01, 2024.04.15> ② <개정 2004.03.25> 삭제 <2011.06.07> ③ <개정 2006.03.01> 삭제 <2011.06.07> ④ <개정 2006.03.01> 삭제 <2011.06.07> ⑤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은 지휘·감독한다. ⑥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각)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인사처·학생생활처·행정처·기획조정처·입학홍고처·국제교류처·국제교류처·대학협력처·대학협력처 등을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 및 센터는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04.03.25, 2006.03.01, 2011.06.07, 2012.02.10, 2014.02.26, 2016.02.29, 2017.04.27, 2019.10.01,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2.03.01, 2024.04.15> ② <개정 2004.03.25> 삭제 <2011.06.07> ③ <개정 2006.03.01> 삭제 <2011.06.07> ④ <개정 2006.03.01> 삭제 <2011.06.07> ⑤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은 지휘·감독한다. ⑥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제22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6.03.01, 2012.12.04, 2024.04.15>	제22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6.03.01, 2012.12.04, 2024.04.15>	신속한 입학허가를 위하여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와 전공교육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정기준은 교양교육과 5% ~ 20%, 전공교육과 80% ~ 85%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2022.03.01, 2022.02.10, 2012.02.10, 2019.10.01, 2022.03.01, 2022.03.01, 2022.04.15, 2024.11.15> ② 학과별 전공심화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05.17, 2022.03.01> ③ 도입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문학)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와 전공교육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정기준은 교양교육과 5% ~ 20%, 전공교육과 80% ~ 85%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10, 2012.02.10, 2019.10.01, 2022.03.01, 2022.03.01, 2022.04.15, 2024.11.15> ② 학과별 전공심화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05.17, 2022.03.01> ③ 도입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문학)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와 전공교육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정기준은 교양교육과 5% ~ 20%, 전공교육과 80% ~ 85%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10, 2012.02.10, 2019.10.01, 2022.03.01, 2022.03.01, 2022.04.15, 2024.11.15> ② 학과별 전공심화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05.17, 2022.03.01> ③ 도입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문학)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변경
제46조(졸업)	① 소정의 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학, 제3학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08.22, 2012.12.04, 2017.04.27, 2022.12.0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③ 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	제46조(졸업) ① 소정의 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학, 제3학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08.22, 2012.12.04, 2017.04.27, 2022.12.0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③ 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	제46조(졸업) ① 소정의 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학, 제3학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08.22, 2012.12.04, 2017.04.27, 2022.12.0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③ 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	대학별 전문학사과정의 통폐합, 이수학점이 상이하며, 학과별 진급금회과정에 교육과정에 따라 2년제 60학점 이상 취득, 3년제 20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필요학점 한

	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을 거쳐 실시한다. 삭제 <2004.03.25., 2017.04.27.> <개정 2022.12.01> ④제2항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인원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4.03.25.> ⑤전분기(수석사과점)의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09.01>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원 기준 학점 및 시행여부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을 거쳐 실시한다. 삭제 <2004.03.25., 2017.04.27.> <개정 2022.12.01> ④제2항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인원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4.03.25.> ⑤전분기(수석사과점)의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09.01>	전분기(수석사과점) 프로페 트 트랙의 졸업 요건 중 취득에 관한 내용 분리 후 트랙 신설																
제46조의2(전분기 수석사과점 졸업)	제46조의2(전분기 수석사과점 졸업) ①전분기(수석사과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r> <th>분류</th><th>학기</th><th>학점</th><th>요건</th></tr> <tr> <td>기본트랙</td><td>4학기 이상</td><td>24학점 이상 이수</td><td>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문장사 합격</td></tr> <tr> <td>프로페트 트랙</td><td>4학기 이상</td><td>30학점 이상 이수</td><td>프로페트 결과 총괄</td></tr> <tr> <td>기타 트랙</td><td></td><td>30학점 이상 이수</td><td>자격을 취득 (자율자정미가총괄 예비심사, 치통기출사)</td></tr> </table> ②전분기(수석사과점) 졸업에 관한 세부 및 기타사항은 전분기(수석사과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분류	학기	학점	요건	기본트랙	4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문장사 합격	프로페트 트랙	4학기 이상	30학점 이상 이수	프로페트 결과 총괄	기타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자격을 취득 (자율자정미가총괄 예비심사, 치통기출사)	제46조의2(전분기 수석사과점 졸업) ①전분기(수석사과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4.15.>	
분류	학기	학점	요건																
기본트랙	4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문장사 합격																
프로페트 트랙	4학기 이상	30학점 이상 이수	프로페트 결과 총괄																
기타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자격을 취득 (자율자정미가총괄 예비심사, 치통기출사)																

제49조의2(전분기 수석사과점 졸업)	제49조의2(전분기 수석사과점 졸업) ①전분기(수석사과점)의 수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46조의 2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발적서시 제5호의 수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분기(수석사과점)의 수석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인원을 경과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이수, 프로페트 트랙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수석인정 시기는 매 학기별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01][전문개정 2023.12.15.]	제49조의2(전분기 수석사과점) ①전분기(수석사과점)의 수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46조의 2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발적서시 제5호의 수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분기(수석사과점)의 수석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인원을 경과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이수, 프로페트 트랙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수석인정 시기는 매 학기별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01][전문개정 2023.12.15.]	학칙 제46조의2 신설기준 학칙개정 총괄요건 개편 에 따른 수료 기준 변경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2.04.15> 1. 피오남의 경우에는 피오남된 금액 전체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선제적반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08.06.22., 2011.06.07., 2022.12.01>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2.04.15> 1. 피오남의 경우에는 피오남된 금액 전체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선제적반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08.06.22., 2011.06.07., 2022.12.01., 2024.04.15>	외국인 등록생의 특수사항 고려하여 반환금 기준 완화

[붙임 3]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문		원 형	개 정(안)	비고
제12조(제학생등록)		①학생의 대학기 등록에 따른 각종 납입금과 그 납부기간은 학기 개시 15일전까지 총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학생은 대학기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④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손된 편입·전입·사망·전제지불 기타 부노미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08.22., 2011.06.07>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⑤제4항은 복학생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2조(제학생등록) ①학생의 대학기 등록에 따른 각종 납입금과 그 납부기간은 학기 개시 15일전까지 총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학생은 대학기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④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손된 편입·전입·사망·전제지불 기타 부노미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08.22., 2011.06.07>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⑤제4항은 복학생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사항 고려하여 인도금 기준 원

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제71조(소집 및 심의)	제71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제안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제 <2008.08.22> 2.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15> 3. 학제 <2021.01.15> 4. 학제 <2021.01.1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1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제안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제 <2008.08.22> 2.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15> 3. 학제 <2021.01.15> 4. 학제 <2021.01.1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1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제안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제 <2008.08.22> 2.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15> 3. 학제 <2021.01.15> 4. 학제 <2021.01.1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1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제안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제 <2008.08.22> 2.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15> 3. 학제 <2021.01.15> 4. 학제 <2021.01.1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창업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별과제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량경영학전(신소재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제13조(전과)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창업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별과제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량경영학전(신소재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제13조(전과)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창업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별과제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량경영학전(신소재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제13조(전과)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창업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별과제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량경영학전(신소재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제13조(전과)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 조항별로 따로 임박 할 것.
※ 신규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삭제,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
※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 개정(안) 한 중 한쪽에만 임박할 것(개정 시에는 현행, 개정(안) 한 중 한쪽에만 임박할 것(개정 시에는 현행, 개정(안) 한 중 한쪽에만 임박할 것)
※ 개정(안) 부분에는 규정 재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 삭제, 전문개정, 문도신설 등의 규정 편용 이들을 표시할 것.

